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「정부조직법」개정에 따라 성주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 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명칭·용어·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 (안 제1조～제8조)

-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외 7개 조례

나.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(안 제9조～제10조)

- 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

다.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인용 정비 (안 제11조～제20조)

-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9개 조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4호)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 9.21. ～ 2017.10.1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분과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및 중앙부처 인용명칭 변경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“안” 1조에서 8조까지는 상위법에 명시된 명칭 및 단순용어나 인용 조문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“안”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“안” 제11조에서 20조까지는 “정부조직법”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입법기술상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한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분과 중앙부처 명칭변경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되, 개별부서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을 해소하여 조례 개정의효율성을 높인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